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을 설치·제공), 일반마사지 업소,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민화 대여점, 호프집, 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관련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
음악산업·게임 산업 진흥법	22시 ~ 다음날 09시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PC방
공중위생관리법	22시 ~ 다음날 05시	찜질사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방법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일반형 콘돌의 경우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소년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함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출입·고용금지업소는 1,000만원, 고용금지업소는 500만원 과징금
-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 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과징금
- 출입시간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금지표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이란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의 종류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아산화질소, 칼라풍선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건의 종류

성기구류,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대가없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담배자동판매기는 앞면 잘 보이는 곳에 최소 150mm×50mm 이상의 크기로 표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주류, 담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각각 100만원 과징금
- 기타 약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청소년에게 유해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성기구류, 레이저 포인터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일반형 콘돌의 경우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소년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함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대상 유통이 제한되는 매체물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광고선전물

- 유형 : 간판, 입간판,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 내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또는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등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의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의 목적으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

✔ 매체물의 범위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정보통신물,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인터넷뉴스서비스, 도서류,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배포하기 전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전시,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판매 또는 제공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구입하거나 구독·관람·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배포하는 경우

- 판매, 대여, 배포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미포장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행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보호법 제30조)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10년 이하의 징역)
-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 호객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